보건복지부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2021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및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안내

1. 관련근거
   가.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」 제4조 및 제8조
   나. 같은 법 시행령 제3조, 제4조 및 제5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

2. 「2021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및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침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,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시·도에서는 **자체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작성**하여 주시기 바라며, 소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제출한 **공공보건의료계획을 취합·검토 후 함께 제출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작성대상 : (시행계획) 관계 중앙행정기관 9개 기관, 시·도 17개 기관 (의료계획) 공공의료기관 230개소 나. 제출처 및 작성 문의 : 각 지침 행정사항 참조 다. **제출기한 : 2021년 9월 17일** **※ (중앙행정기관 및 각 시·도) 소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작성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붙임 1. 2021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안내.
2. 2021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안내.
3. 2021년 주요 시책 추진계획(별송). 끝.

보건복지부장관

수신자	고용노동부장관(산재보상정책과장),교육부장관(국립대학정책과장),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(원자력연구개발과장),국가보훈처장(보훈의료과장),국방부장관(보건정책과장),국토교통부장관(자동차운영보험과장),법무부장관(치료처우과장),경찰청장(복지정책담당관),서울특별시장(보건의료정책과장),인천광역시장(보건의료정책과장),경기도지사(공공의료과장),강원도지사(공공의료과장),충청북도지사(보건정책과장),충청남도지사(보건정책과장),세종특별자치시장(보건정책과장),대전광역시장(건강보건과장),대구광역시장(보건의료정책과장),경상북도지사(감염병관리과장),경상남도지사(보건행정과장),부산광역시장(건강정책과장),전라남도지사(건강증진과장),전라북도지사(보건의료과장),광주광역시장(건강정책과장),울산광역시장(시민건강과장),제주특별자치도지사(보건건강위생과장),근로복지공단이사장,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,대한적십자사 회장,질병정책과장,보험정책과장,장애인정책과장,정신건강정책과장,국립암센터원장,국립정신건강센터장,국립나주병원장,국립부곡병원장,국립춘천병원장,국립공주병원장,국립소록도병원장,국립재활원장,국립마산병원장,국립목포병원장,국립중앙의료원장

행정사무관 이형주 공공의료과장 전결 07/15 노정훈

협조자

시행 공공의료과-3897 (2021.07.15.) 접수 공공의료평가운영팀-518 (2021.07.15.)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/ http://www.mohw.go.kr
전화 044-202-2532 /전송 044-202-3929 / heartkh@korea.kr / 공개